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24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이훈기・이광희・김태선

정을호 · 김교흥 · 문정복

김태년 • 황 희 • 박희승

이병진 • 이재강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 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이러한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산 또는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

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산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1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위하 여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 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워)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1. (생략) <신 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생 산 또는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u>3. · 4.</u>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2. · 3. (생 략)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②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 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

차 이용을 위하여 자동화재탐 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 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